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8 - 17호

「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11월 26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사업의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낭비요인의 제거와 행정능률을 높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,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일몰의 심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나. 일몰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다.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

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

-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